8. 공공건설사업시행절차규정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239호 1999. 7. 19.

개 정 이 유

공공 건설사업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졸속한 추진행태 및 불합리한 제도 · 관행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부실시공등이 초래되어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의 개혁」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설물의 품질은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 내재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공 건설사업의 기획 · 조사 · 설계 · 보상 · 발주 · 시공 및 유지관리 등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가. 적용범위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기획 · 조사 · 설계 · 보상 · 발주 · 계약 · 시공 및 유지관리로 정하고 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이거나 재해복구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함.

나. 총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기관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건설사업의 기본계획기 수립내용을 정하고 집단사업은 기본계획 내용에 개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포함하도록 함.

라. 기본설계의 내용·최소설계기간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기본설계 기간중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하도록 함.

마. 측량 및 지반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의 내용·최소설계기간 및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바. 토지보상은 당해 건설사업의 발주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일괄입찰·도로등 선형공사·댐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사.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 단위공종별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제로 투입된 비용·기간과 비교·관리하도록 함.

아. 건설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용역담당자·감리원 및 작업반장급 이상의 시공자에 대하여는 실명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책임감리보고서에 이를 수록하도록 함.

자. 건설공사 완료시에는 사업내용 및 효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유사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는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사후 평가 항목을 정함.

주택회보